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87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배준영 · 박대출 · 이종욱
이상희 · 김종양 · 김은혜
안철수 · 곽규택 · 김미애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